

第107回(定例會)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 本會議會議錄

第4號(附錄)

서울特別市鐘路區議會事務局

目 次

1. 서울特別市自治區의財源調整에 관한條例改正建議要求(案) 審査報告書	1面
2. 서울特別市鐘路區區民會館·設置및使用料徵收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7面
3. 서울特別市鐘路區洞事務所名稱과所在地및管轄區域에 관한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0面
4. 서울特別市鐘路區統長子女獎學金支給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3面
5. 서울特別市鐘路區統·班設置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6面
6. 서울特別市鐘路區公印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19面
7. 서울特別市鐘路區食品振興基金條例(案) 審査報告書	22面
8. 서울特別市鐘路區駐車場設置및管理條例中改正條例(案) 審査報告書	27面
9. 2001年度 서울特別市鐘路區區有財産管理計劃變更計劃(案) 審査報告書	32面
10. 2001年度 一般會計 및 特別會計 歲入·歲出豫算(案) 審査報告書	37面
11. 2000年度 第3回 追加更正豫算(案) 審査報告書	48面

1. 서울특별시자치구의재원조정에관한조례개정건의요구(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선상선 의원의 5인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선 상 선 의원)

가. 제안이유

- 우리 종로구는 서울의 심장부로서 청와대, 정부중앙청사, 헌법재판소, 감사원 등 공공기관 106개소, 교육기관 68개소, 외국공관 27개소 등이 있고
- 창경궁, 경복궁, 창덕궁 등 고궁과 국보 69, 보물 27, 사적 16, 천연기념물 7 등 총 284점이 있으며, 조계사 본산, 기독교 100주년 기념관, 기독교 연합회관, 천도교 수운회관 등 종교시설을 포함해서 비과세 대상면적이 전체의 66.7%에 달하고 있으나 반면 호적인구는 140만, 주간 유동인구 2~300만 등으로 예산이 수반되는 행정수요는 시 및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중심지로서 추가부담이 유발되고 있어 같은 중심지역이며 인접지역인 중구는 재정 자립도가 100%에 달하고 있으나
- 우리 구는 70% 내외를 유지하는 불합리가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이와 같은 자치구간의 재정 불균형 시정을 목적으로 광역자치단체에 자치구간의 재정조정에 관한 조례를 두어 우리 구와 같은 입지를 가진 구의 재원을 조정하고 있으나
- 본 조례의 측정치 가운데 우리 구와 같이 예산수요는 많으나 비과세지가 많아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는 자치구에 대한 고려 단위가 없어 조정 조례로서의 기능유지가 미흡하여 주문과 같이 합리적 기준을 두도록 건의 요구함

3. 참고사항

가. 건의이유 입증자료

○ 토 지

- 전체면적 : 2,392만㎡
- 과세대상 면적 : 793만 5,000㎡(33.3%)
- 비과세 총면적 : 1,598만 5,000㎡(66.7%)

○ 종로구에만 소재한 특수 공공시설 및 사적지

- 특수한 국가시설 : 청와대, 총리공관, 감사원, 기무사 등
- 정부기관 및 공공시설 : 정부종합청사, 문화관광부, 기상청, 서울지방경찰청, 세종문화회관 등
- 사적지 :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경희궁, 운현궁, 종묘, 파고다공원 등
- 종교시설 : 조계사, 기독교연합회관, 기독교100주년기념관 등
- 기 타 : 미국대사관 및 관사, 서울대학병원, 사우디아라비아 대사관

○ 비과세 산출세액

- 합계 세액 : 306만㎡ 192억 3,300만원
- 종합토지세 : 246만 4,000㎡ 189억 400만원
- 재산세 : 59억 6,000㎡ 3억 2,900만원

○ 비과세 유형별 현황

- 합계세액 : 35건 192억 3,300만원
- 국가기관 : 9건 50억 2,600만원
- 사 적 지 : 8건 34억원
- 공 원 : 3건 5억 2,800만원
- 외국기관 : 5건 5억 9,500만원

- 종교시설 : 4건 2억 5,000만원
- 문화시설등: 6건 94억 3,400만원
- '99 종로구 세입 및 조정교부금 현황
 - 합 계 : 684억 5,500만원
 - 구 세 : 420억 4,000만원(61.4%)
 - . 면허세 : 18억 2,700만원
 - . 재산세 : 69억 9,600만원
 - . 종합토지세 : 248억 9,900만원
 - . 사업소세 : 77억 4,300만원
 - . 과년도구세 : 5억 7,500만원
 - 조정교부금 : 264억 1,500만원(38.6%)

4. 비과세 토지 및 건물내역

국가기관

(단위 : 천원)

연 번	명 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 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²)	재산세	
	계		토지	384,925	4,907,695	5,025,912
			건물	239,494	118,217	
1	청와대	세종로1	토지	227,672	1,064,929	1,081,627
			건물	37,107	16,698	
2	감사원	삼청동25-23	토지	21,312	37,457	46,898
			건물	20,981	9,441	
3	총리공관	삼청동106	토지	14,876	47,093	47,989
			건물	1,990	896	
4	정부종합청사	세종로77-6	토지	41,905	2,977,482	3,014,480
			건물	85,054	36,998	
5	문화관광부	세종로82-1	토지	6,400	282,691	286,511
			건물	9,871	3,820	
6	기상청	송월동1	토지	24,951	84,374	87,897
			건물	7,940	3,523	
7	서울지방경찰청	내자동200-11	토지	16,199	270,878	314,044
			건물	65,107	43,166	
8	기무사	소격동165	토지	27,308	129,446	131,435
			건물	4,421	1,989	
9	정부기록전산실	창성동117-6	토지	4,302	13,345	15,031
			건물	7,023	1,686	

□ 사적지

(단위 : 천원)

연 번	명 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종류	면적(m ²)		
	계		토지	1,405,080	3,400,150	
1	경복궁	세종로1	토지	308,264	2,021,521	
2	창경궁	와룡동2-1	토지	215,713	123,008	
3	창덕궁	와룡동2-71	토지	565,225	322,314	
4	운현궁	운니동98-50	토지	7,107	27,018	
5	경희궁	신문로2가2-1	토지	100,930	174,402	
6	종묘	훈정동90	토지	196,731	679,902	
7	동묘	승인동238-1	토지	9,332	36,511	
8	동대문	종로6가69	토지	1,778	15,474	

□ 공원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종류	면적(m ²)		
	계		토지	385,598	528,535	
1	파고다공원	종로2가38-1	토지	15,720	203,731	
2	사직공원	사직동1-48	토지	168,099	145,237	
3	낙산근린공원	동숭동 산2	토지	201,779	179,567	

□ 외국기관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재산세	비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²)		
	계		토지	84,817	588,200	595,109
			건물	19,094	6,909	
1	미국대사관	세종로82-14	토지	6,488	287,090	290,910
			건물	9,871	3,820	
2	미국대사관저	사간동34-30	토지	35,876	160,780	162,604
			건물	6,754	1,824	
3	체코대사관	신문로2가 1-121	토지	728	1,595	2,275
			건물	1,030	680	
4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	신문로2가 1-268	토지	521	1,182	1,726
			건물	1,208	544	
5	사우디아라비아대사관저	가회동1-6	토지	41,204	137,553	137,594
			건물	231	41	

□ 종교시설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²)	재산세	
	계		토지	26,436	219,483	250,278
			물건	57,808	30,795	
1	조계사	견지동45	토지	13,578	90,679	92,262
			물건	2,005	1,583	
2	기독교100주년기념관	연지동135	토지	5,346	57,244	63,144
			물건	8,939	5,900	
3	기독교연합회관	연지동136-56	토지	4,509	45,526	63,619
			물건	27,384	18,093	
4	여전도회관	연지동1-1	토지	3,003	26,034	31,253
			물건	7,907	5,219	

□ 문화시설 등

(단위 : 천원)

연 번	명칭	소재지	비과세물건		종합토지세	비고 (합계세액)
			종류	면적(m ²)	재산세	
	계		토지	177,567	9,260,405	9,434,046
			건물	279,979	173,641	
1	세종문화회관	세종로83-1	토지	21,091	1,347,475	1,371,419
			건물	55,043	23,944	
2	서울시교육위원회	신문로2가2-64	토지	6,482	5,448,140	5,451,831
			건물	6,181	3,691	
3	한국방송대학	동숭동169	토지	16,269	245,481	259,026
			건물	20,522	13,545	
4	서울대학병원	연건동28	토지	92,246	2,113,042	2,235,198
			건물	185,085	122,156	
5	정독도서관	화동1	토지	38,470	94,742	100,592
			건물	12,999	5,850	
6	이화장	이화동1	토지	3,009	11,525	15,980
			건물	149	4,455	

3.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천 상 옥 위원)

(답변자: 선 상 선 위원)

문) 측정단위별 수치산정기준을 1개항 추가하게 되면 우리 구에는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는 것이며 개정은 가능한 것입니까?

답) 우리 구에는 비과세 대상지역이 전체의 66.7%에 달하기 때문에 특정기준에 비과세 부분도 포함하는 개정 건의요구(안)이 수용되면 15억 정도의 조정교부금을 받아들 수 있으며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4. 意見 採擇 : 없 음

5.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 서울특별시종로구구민회관설치·관리및사용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2000년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2000. 9.28)의 심의결과에 따라 종로구 구민회관의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입장권 사전검인제도에 의한 행정규제를 개선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증진 및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제9조제2항의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시에 사전검인을 받도록 한 것을 입장 수익 총액을 대관 사용 종료 후 통보하도록 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의성 증대

다. 개정근거

○ 2000년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의 심의결과(종로구 기예05090-1318, 2000.10. 4)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행정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를 폐지하여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의 편익을 증진코자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조례 제9조제2항에서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입장권을 발행할 경우 사용료 징수를 위해 사전검인을 받도록 하던 것을 삭제하고 대신 시설 사용 종료 후 입장수입 총액을 통보토록 함

다. 관련법규

○ 행정규제기본법 제3조

③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이 정하는 취지에 따라 조례·규칙에 규정된 규제의 등록 및 공표,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한 심사, 기존 규제의 정비, 규제심사기구의 설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검토의견

○ 관람객으로부터 입장료를 징수하는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사용료는 세금을 공제한 총 수입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금액이므로

○ 입장료 총 수입액의 확인을 위하여 입장권에 대한 사전검인을 받도록 한 것은 다분히 행정편의적인 규제이므로 폐지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구민회관 대관 사용자가 사전검인 받은 만큼만 사용료를 납부하던 것을 입장수입 총액 통보 후 사용료를 받는 것으로 개정할 경우, 깨끗한 정부 깨끗한 지방자치 구현을 표방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히려 부조리 개연이라는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답) 금년도에 검인 사례는 2회가 있었습니다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부정적인 요소만을 생각해서 규제하는 것은 다분히 행정 편의적인 사항이라는 답변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3. 서울특별시종로구동사무소명칭과소재지및관할구역에관한조례증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사직동 관할구역의 세종로 100번지 일대가 종로1,2,3,4가동의 방향으로 도로(세종로 동측)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은 물론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세종로 100번지 일대를 사직동에서 종로1,2,3,4가동으로 행정동을 변경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사직동 관할의 법정동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를 종로1,2,3,4동으로 행정동을 변경

다. 개정근거

-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 구청장 방침(총무31600-2853, 2000.10. 6)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사직동 관할구역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가 세종로거리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주민불편 및 행정능률을 저해하므로 행정동 관할을 사직동에서 종로1.2.3.4가동으로 변경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골자

○사직동 관할의 법정동인 세종로 100번지 일대를 종로1.2.3.4가동으로 행정동으로 변경

다. 대상지역 현황

○면 적 : 47필지 35,987.4㎡(약 0.035km²)

- ┌ 대 지 : 22필지 32,377㎡
- └ 도 로 : 25필지 3,610.4㎡

○지역현황 : 관공서, 공공기관이 소재하며 거주 주민은 없음

(임민재단, 한국전기통신공사, 문화관광부, 미대사관, 열린마당이 위치)

○지리적 여건

- 대상지역은 행정동이 사직동에 속하면서 세종로 대로를 사이에 두고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어 민원 불편 및 행정능률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되고 있음

라. 의견수렴 내용

구 분	찬성(비율)	반대(비율)	사 유
관계 구의원	3 (100%)		동사무소와 거리가 가깝고 교통 편의
대상지역 건물주	3 (100%)		"

마. 조정내역

구 분	법정동 (행정동)	현 행			조 정			조 정 후		
		면적(km ²)	세대	인구(명)	면적(km ²)	세대	인구(명)	면적(km ²)	세대	인구(명)
편입되는 지역	세종로동 (사직동)	1.22	3,718	9,277	감 0.035	-	-	1.18	3,718	9,277
편입받는 지역	세종로동 (종로1.2.3.4 가동)	2.36	3,836	7,852	증 0.035	-	-	2.39	3,836	7,852

바. 관련법규

○지방자치법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명칭과 구역)

⑤동·리에 있어서는 행정능률과 주민편의를 위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하나의 동·리를 2개 이상의 동·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리를 하나의 동·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동·리("행정동·리"라 한다)를 따로 둘 수 있다.

사. 검토의견

○대로를 중심으로 행정동 경계를 조정함으로써 민원 편의 및 행정관리의 효율성을 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4. 서울특별시종로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査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査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2000년 제1차 종로구 규제개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규제사무로 확정된 통장자녀장학금지급정지 사유 조항에 대해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명확한 상위법령 근거가 없는 조문을 삭제하여 민원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객관적 기준이 모호한 조문 삭제
 -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안 제9조제1항제1호)
 -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안 제9조제1항제2호)
 - 장학금을 학비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안 제9조제1항제5호)

다. 개정근거

-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규제법정주의), 제5조(규제의 원칙)
-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모델 적용지침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일부가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므로 규제개혁 차원에서 관련규정을 폐지하기 위한 조례의 개정임

나. 주요 골자

- 장학금 지급정지 사유 중 모호한 규정 삭제(조례 제9조 관련)

[삭제규정]

1. 보호자인 통장이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을 불미스런 행위를 한 때
2.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길 때
5. 장학금을 학비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때

[존치규정]

3. 장학생의 품행이 극히 불량하거나 특기자로서의 자격을 상실할 때
4. 장학생의 퇴학·정학 또는 휴학처분을 받았을 때

다. 장학금 지급규정(조례)

- 장학생의 자격

┌ 유공장학생 : 지역발전, 반사회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 특기장학생 :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 장학생의 정원 : 통장의 10% 범위 내

- 장학금 : 공납금 전액. 다만 필요한 경우 공납금의 일부

라. 장학금 지급현황

(금액:천원)

지급년도	지급자녀수	지급액	비 고
1998년	41명	9,384	중학생 10 / 고등학생 31
1999년	36명	8,216	중학생 9 / 고등학생 27
2000년	38명	8,617	중학생 10 / 고등학생 28

마. 검토의견

- 지급정지 사유 중 객관적 기준이 모호하여 현실성이 없는 규정을 삭제하는 것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통장자녀 장학생의 선발기준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장학생은 유공장학생과 특기장학생으로 구분됩니다. 유공장학생은 지역발전, 반사회 운영, 질서, 환경개선, 선행 및 주민화합에 유공이 있는 통장의 자녀 중에서 선발하고, 특기장학생은 통장의 자녀로서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의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 중에서 선발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查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5. 서울특별시종로구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헌법의 남녀평등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남녀차별금지법이 제정됨에 따라 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조항에 명시적으로 남녀 차별한 내용을 삭제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여성차별적 조문 삭제 (안 제5조제2항제1호, 제2호)

다. 개정근거

- 남녀차별금지법 제1조(목적),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개정 이유

○ 헌법의 남녀평등 이념을 실현하기 위해 '99년 2월 8일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이 제정됨에 따라 조례의 남녀차별적 조항을 삭제하기 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통장의 위촉대상 중 하나인 30세 이상 50세 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선출토록 한 내용 삭제

다. 개정내용 (제5조제2항)

1. 당해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 주민으로부터 덕망과 신임이 있는 활동적인 자 2. 민방위대에 편성된 60세이하의 지도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1. 당해통의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주민으로 덕망과 신임이 있는 60세이하의 민방위대에 편성된 활동적인 자
---	---	---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3. 제1호 이외의 자 중에서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	--

라. 통장위촉 현황

정 원	현 원	성 별		연 령 별			
		남	여	31~40세	41~50세	51~60세	61세이상
345명	342명	302명	40명	15명	71명	162명	94명

마. 검토의견

○ 현행 조례상으로도 여성을 통장으로 위촉할 수는 있으나 통장의 임무수행과 밀접한 상관관계가 없는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 중”에서 위촉할 수 있도록 별도규정을 둔 것은 남녀평등과 관련 다소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를 삭제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바. 관련법규

○ 남녀차별금지및구제에관한법률 제3조(고용에서의 차별금지)
공공기관 및 사용자는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의 평등한 기회와 대우가 보장되도록 하여야 하며 채용, 승진, 전보, 해고, 정년 등에 있어서 남녀차별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질의자 : 홍 기 서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문) 제5조제2항제3호인 '특별히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로 인하여 60세이상도 통장이 가능토
록 되어 있어 이 부분도 삭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 각종 법에도 원칙 외에 예외 단서조항을 둡니다. 이 조항도 예외조항으로 통·반장 위촉에 있어
행정상 꼭 필요한 사항입니다.

문) 이번에 개정코자 상정한 내용 외에 제4조 '통장의 임기' 조항도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연
임조항을 1회 또는 2회로 규정토록 말입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해 주십시오.

답) 내년에 '통·반 설치조례'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의원님들께 보고를 드린 후 조정토록 하겠습니
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6. 서울특별시종로구공인조례증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의결

2. 提 案 說 明 의 要 旨

(제안설명자 : 행정관리국장 김 현 식)

가. 개정이유

사무관리규정 개정(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8. 7)에 의거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관인 규정을 마련하여 사무의 간소화와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우리 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각 부서에서 사용하도록 신설 (안 제2조제3항)

다. 개정근거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제16521호, 1999. 8. 7) 제21조, 제36조제3항 및 제37조

3. 專 門 委 員 檢 討 報 告 의 要 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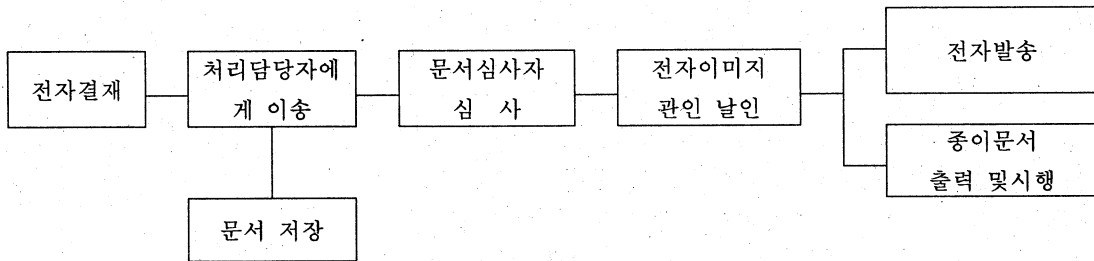
가. 개정 이유

- 사무관리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라 사무의 간소화, 행정능률의 향상을 위하여 전자문서에 사용할 전자이미지 관인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 내용

-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한 전자이미지 관인을 컴퓨터에 입력하여 각 부서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제2조제3항 신설

다. 전자이미지 관인사용 절차



라. 관련법규

<사무관리규정>

○ 제3조(용어의 정의)

11. “전자이미지 관인”이라 함은 컴퓨터 등 정보처리능력을 가진 장치에 의하여 전자적인 이미지 형태로 사용되는 관인을 말한다.

○ 제21조(관인날인 및 서명)

① 행정기관의 장 또는 합의제기관의 명의로 발신하는 문서의 시행문과 임용장, 상장 및 각종 증명서에 속하는 문서에는 관인(전자이미지 관인을 포함한다)을 찍거나 행정기관의 장이 서명을 한다.

○ 제36조(특수관인)

③ 각급 행정기관은 전자문서에 사용하기 위하여 전자이미지 관인을 가질 수 있으며, 전자이미지 관인은 관인을 전자입력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마. 검토의견

- 행정환경이 사이버공간의 온라인 전자문서 기반으로 전환되어감에 따라 전자결재문서 발송시 전자 이미지 관인사용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당함

4. 質疑 및 答辯 要旨 : 없 음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7.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 查 經 過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시민행정위원회 상정 · 의결

2. 提 案 說 明 的 要 旨

(제안설명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가. 제정이유

식품위생법 제71조 동법 제65조제4항(법률 제6154호, 2000. 1.12) 및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령 제16922호, 2000. 7.27)의 개정으로 식품진흥기금 재원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에 대한 과징금이 서울특별시와 구에 각각 40%:60%로 배분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서울특별시종로구식품진흥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의 수준 향상을 위한 사업목적
- 기금조성은 식품위생법 제65조의 규정에 의한 과징금, 출연금, 기타 등으로 조성
- 기금의 용도
 - 영업시설개선과 모범음식점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 음식문화개선 및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지원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 법시행령 제42조에서 정하는 사업
- 기금의 관리·운용

- 기금운용심의회 설치 및 기능
 - 심의회는 위원장(생활복지국장)을 포함한 10인 이내로 구성
 - 심의회 기능은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 심의
- 시설개선자금 및 모범음식점 육성자금의 용자 등
- 부정·불량식품 등의 신고에 대한 보상

다. 제정근거

- 식품위생법(제71조, 제65조) 같은법시행령(제38조, 제39조, 제39조의2, 제42조, 제43조)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제정 이유

- 시·도에만 설치된 식품진흥기금을 2000년 7월 13일부터 시·군·구에도 설치하도록 식품위생법 제71조가 개정됨에 따라
- 식품위생 및 주민영양 수준향상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을 충당하기 위하여 서울시의 조례 준칙에 의거 조례를 제정하는 것임

나. 주요 골자

- 기금의 재원은 식품위생법에 의하여 징수하는 과징금,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기금의 운용수익금 등으로 함(안 제3조)
- 기금의 용도는 영업자의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주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등 7개 사업으로 함(안 제4조)
-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종로구 식품진흥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함(안 제6조)
- 위원장은 식품위생 담당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식품위생 전문가, 식품위생업 직능단체 대표자, 환경위생과장, 청소행정과장, 동장으로 구성토록 함
- 구청장은 영업시설 개선과 모범음식점의 육성을 위한 용자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용자 계획을 수립하여 공고하도록 함(안 제7조)
- 시설개선자금의 용자한도는 시설개선에 따른 총 소요금액의 80% 이내로 함(안 제10조)
- 부정·불량식품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20만원 이내의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

다. 식품위생법 과징금 징수현황

(금액:천원)

년도별	징수결정액		징 수 액		체 납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1998년도	245	544,230	238	518,910	7	25,320
1999년도	201	667,140	185	610,860	16	56,280
2000년도	56	159,440	52	151,920	4	7,520

※2000년도 과징금 부과징수금액이 대폭 감소된 것은 '99. 12. 29 시행규칙 개정으로 과징금 처분대상이 대폭 축소된 때문임

라. 과징금의 귀속비율(시행령 제39조의2)

- 시·도 : 100분의 40
- 시·군·구 : 100분의 60

마. 검토의견

- 시·도에만 설치·운용하던 식품진흥기금을 구에도 설치·운용함으로써 구의 실정에 맞는 기금 운용으로 주민의 건강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러나 식품위생법시행령 제3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의 60%만 구의 기금으로 귀속되고 과징금 부과대상이 대폭 축소되었으므로 기금의 운용금액은 제한적일 것으로 판단됨

바. 관련법규

<식품위생법>

○ 제71조(식품진흥기금)

- ①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의 수준의 향상을 위한 사업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재원에 충당하기 위하여 시·도 및 시·군·구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한다.(2000.1.12 개정)
- ② 기금은 다음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
 2. 제65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3.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4.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익금
- ③ 기금은 다음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영업자의 영업시설개선을 위한 용자사업
 2.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홍보사업 및 명예감시원에 대한 활동지원
 3.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사업
 5. 식품위생 교육·연구기관의 육성 및 지원
 6. 음식문화의 개선 및 좋은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의 지원
 7. 기타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 제65조(과징금 처분)

①식품의약품안전청장, 시·도지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영업자가 제58조제1항 각호 또는 제59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영업정지, 품목제조정지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처분에 갈음하여 1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과징금 중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부과·징수한 과징금은 시·도 및 시·군·구의 식품진흥기금에 귀속한다. 이 경우 시·도 및 시·군·구에의 귀속방법 등에 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품위생법시행령>

○ 제39조의2(식품진흥기금의 귀속비율)

법 제65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식품진흥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시·도 및 시·군·구 귀속비율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시·도 : 100분의 40
2. 시·군·구 : 100분의 60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현 수 한 위원, 선 상 선 위원, 흥 기 서 위원, 천 상 욱 위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안 제2조제2호의 ‘모범음식점’ 지정은 구청장이 임의로 지정하는 것입니까?

답) 모범음식점 지정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에 상세하게 규정되어 있어 이 절차에 따라 법적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한하여 모범음식점으로 지정하게 됩니다. 모범음식점 지정은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2000년도에는 364개 업소가 신청하여 신규지정 및 재지정을 포함 총 292개의 모범음식점이 지정되었습니다.

문) 기금 조성방법에 식품위생단체의 출연금도 포함되어 있는데, 식품위생단체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답) 식품단체로 현재 구에는 요식업조합중앙회 종로지회가 있습니다.

문) 과징금의 귀속비율이 시와 구가 40%대 60%라고 했는데, 굳이 시에 40%를 줄 필요가 있는 것입니까? 또한 시의 40%는 구에서 활용이 불가능한 것입니까?

답) 과징금의 귀속비율은 식품위생법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그동안 시에서는 식품진흥기금으로 900억원을 조성하였습니다. 각 구에 배분되는 기금은 2000. 7.13 이후 부과된 것만 해당됩니다. 시에 조성된 기금 중 일부는 25개 자치구에 배분해 줄 예정이며, 시의 기금은 시 차원에서 식품진흥기금조례에 규정된 기금의 용도대로 사용할 것입니다.

문) 기금의 용자범위나 이자율 등이 조례(안)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누락된 것은 아닙니까?

답) 조례(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어 공포가 되면, 서울시 규칙에 맞추어 시행규칙을 제정할 것입니다. 여기에 자세한 내용을 규정하겠습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 시에서 보유중인 식품진흥기금 중 일정액을 자치구에 배분시, 종로구는 타구에 비해 업소와 과정금 징수금액이 많고 시설개선자금이 타구에 비해 많이 소요될 것이므로 추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촉구

8. 서울특별시종로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무건설위원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건설교통국장 오 종 석)

가. 개정이유

국무조정실의 규제개혁 권고안으로 시달된 규제정비사항인 주차거부금지 조항 및 하역주차구간에 관한 조항의 규제 내용을 완화하고 주차장법 제19조제5항 및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법 제19조제9항의 규정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으로 우리 구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임

나. 주요골자

- 주차거부금지 규정 완화(안 제3조제6호 삭제)
- 하역주차구간의 주차금지 규정 개정(안 제8조제5항)
- 부설주차장 설치면제와 관련한 용어의 정의조항 신설(안 제21조의2)
- 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조항 신설(안 제21조의3)

다. 개정근거

- 주차장법 제19조
-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등에 관한 조례작성 지침(서울특별시 주차 01110-1257, 2000.7.3)
- 지방자치단체규제개혁 모델 적용지침 및 국무조정실 권고안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개정 이유

○2000년 7월 29일 주차장법 개정으로 지금까지 시행규칙으로 정하던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개정됨에 따른 사항과 현행 조례사항 중에 규제개혁위원회가 규제완화 차원에서 개정을 권고한 사항의 개정

나. 개정 요인별

- 법 개정에 따른 개정
 - 조례안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 조례안 제21조의3(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산정기준)
- 규제개혁 권고사항
 - 조례안 제3조(주차거부금지 열기사항 중 일부)
 - 조례안 제8조(하역주차구간 내 주차금지차량 기준)

다. 주요골자

< 개정조문의 포괄적 의미 >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자가 그 의무이행이 곤란한 경우는 설치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하고 구청장이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에 대한 구체적 방법 규정

요인별	개 정 조 문	개 정 요 지
법개정	제21조의2(용어의 정의) 신 설	다음 용어에 대한 용어정의 규정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 설치에 갈음하여 구청장에게 납부하는 비용 2. 노외주차장 무상사용권: 설치비용에 상응하는 공영 노외주차장 무상이용권 3. 무상사용노외주차장 :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가 이용토록 지정한 주차장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신 설	1. 설치비용 산출방법 2.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산정방법 3. 토지가액평가방법 4. 건축비 산출방법

○조례안 제21조의3(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출방법) 개정안 세부내용

1. 부설주차장설치비용 총액 계산 = 1면당 설치비용(무상노외주차장)×주차대수(면제된 부설주차장)
2. 무상사용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1면당 설치비용 = 총 설치비용÷총 주차구획 수
3. 토지가액은 공시지가 기준

4. 건축비는 당해 공영주차장의 건설에 소요된 설계비와 감리비 포함한 건축비로 하되 준공 1년 경과와 경우는 한국은행 발표 생산자 물가지수를 보정하여 산정

요인별	개 정 조 문	개 정 요 지
규제 개혁 완화	제3조(주차거부금지) 유료주차장 이용거부사항 1. 차 구조상 주차곤란 2. 인화성물질 적재 3. 주차장 구조손상 우려 4. 차를 이용 상행위 5. 영업종료 2시간 전 사전요금 납부 거절 6. 이용제한시간 초과차량	제1호 ~ 제5호까지는 존치하고, 제6호 이용제한시간 초과차량 삭제
	제8조(하역주차구간) ⑤하역주차구간에는 자동차 및 16인승 이하의 소형승합차 외의 자동차 주차를 금지한다. 이 경우 자동차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규정에 의한다.	⑤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한다.

< 주차장의 종류 > 주차장법 제2조

- 노상주차장 :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구역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노외주차장 : 도로의 노면 및 교통광장 외의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부설주차장 :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에 부대하여 설치된 주차장으로서 당해시설의 이용자 또는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
- 기계식주차장치 : 노외주차장 및 부설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설비

라. 관련법규

< 부설주차장의 정의, 설치 및 무상사용권과 조례 개정 근거규정 >

○주차장법 제9조(부설주차장의 설치)

1. 건축물, 골프연습장, 기타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시설물 내부 또는 그 부지 안에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규모 이하인(300대) 때에는 동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설물의 인근부지에 단독 또는 공동으로 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설물 부지 인근의 범위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
 령 : 직선 300m, 도보 600m
 조례 : 직선 150m, 도보 200m

5. 제1항의 경우에 시설물의 위치, 용도, 규모 및 부설주차장의 규모 등이 대통령령이(통행제한지역, 판매 및 영업시설이 아닌 시설, 주차대수 300대 이하)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때에는 당해 주차장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구청장에게 납부함으로써 부설주차장의 설치에 갈음할 수 있다.

- 6.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자에게 납부비용에 상응하는 범위 안에서 노상주차장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여야 한다.
- 9.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비용의 산정기준 및 감액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국무조정실 시달 규제개혁안 >

○일 시 : 2000년 9월 23일

○내 용 : 조례 제8조제5항 하역주차구간 금지차량 규정을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로 개정 통보

마. 검토의견

- 상위법 개정으로 시행규칙에 정하였던 사항을 조례에 정하는 사항으로 타당한 개정안으로 사료되나
- 조례안 제8조제5항의 하역주차구간 금지차량 개정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항이나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조례안 문구가 다소 추상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에서 손가방을 내리면서도 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할 경우 화물하역장으로서의 설치목적이 퇴색될 소지가 있음

4. 質 疑 및 答 辯 要 旨

(질의자 : 오 금 남 위원)

(답변자 : 건설교통국장 오 종 석)

문) 조례(안) 제8조제5항의 하역주차구간 금지차량 개정규정은 규제개혁위원회 권고사항에 따른 사항이나 하역주차구간에는 하역과 무관한 차의 주차를 금지한다는 조례(안) 문구가 다소 추상적 표현으로 되어 있어서 승용차에서 손가방을 내리면서도 하역이라고 주장하면서 주차하면 화물하역장으로서의 설치목적이 퇴색될 소지가 있지 않습니까?

답) 조례(안) 제8조제5항은 규제의 내용을 완화한 사항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일의 발생 소지가 있으나, 융통성 있게 관리 단속하면 별문제 없으리라 봅니다. 우리 구는 하역주차구간이 없어서 이 항에 해당되지 않으나, 시에서 관리하는 청계천지역이 하역주차구간에 해당되는데 시 조례도 개정이 되었고 우리 구도 개정하여도 무방하리라 판단됩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9. 2001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계획변경계획(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재 무 건 설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9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30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4차(2000. 12. 11) 재무건설위원회 상정·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제안설명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가. 제안이유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 및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제36조의 규정에 의거 구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에 대한 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구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 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구청사 제1별관 증축, 창신제3동청사 건물신축 및 토지매입, 청운경로당 매각 등

다. 관계법규

- 지방재정법 제77조, 동법시행령 제84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 서울특별시종로구구유재산관리조례 제36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장 소 수)

가. 승인신청 사유

○2000년 11월 21일 제106회 임시회에서 2001년도 구유재산관리계획을 승인한 바 있으나 그 당시 반영하지 못한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사항에 대하여 추가 신청코자 하는 사항임

나. 신청 내용

○다음 재산의 취득 처분

구 분	재산의 표시			취득(처분)사유	취득(처분)시기
	지목	소재지	면적(평)		
취 득	건물	수송동 146-2	152.2	청사 증축	2001년 상반기
	건물	창신동 23-837	496.9	청사 신축	2001년 상반기
	토지	창신동 23-837	127.0	취득(재경부→구)	2001년 상반기
처 분	토지	청운동 4-20	223.9	경로당 이전	2001년 하반기
	건물	청운동 4-20	81.8	경로당 이전	2001년 하반기

다. 취득·처분의 사안별 검토

제1별관 옥상 증축

< 증축계획 >

- 위 치 : 제1별관 5층 옥상
- 증축면적 : 152평
- 건축구조 : 샌드위치 패널 및 일부 슬라브 처리
- 공 사 비 : 3억 2,400만원
 - ┌ 설 계 용 역 비 : 862만 4,000원
 - ├ 구조안전진단비 : 2,000만원
 - └ 공 사 비 : 2억 9,537만 6,000원
- 공사기간 : 2001년 4월 ~ 9월
- 증축공간이용계획 : 사무실, 입찰실, 다목적용 회의실 등

< 현 제1별관 현황 >

- 대 지 : 2,623.78평
- 건 평 : 3,924평
 - ┌ 지하1층 : 변전실 등
 - ├ 지상1층 : 민원실
 - ├ 지상2층 : 의회
 - ├ 지상3층 : 의회 및 구
 - └ 지상4, 5층 : 구청 사용

○소유권 문제

- 토지 : 종로구 소유('88. 9. 15)
- 건물 : 미등재
- ┌ 서울시 주장 : '88.4.30 사용기준으로 제1별관 3, 4, 5층을 서울시 소유로 분할등재 요구
 - └ 우리구 의견 : 당초 종로구청사 부지로 확보한 후 시의 필요에 따라 종로구 민원실과 교통 센터를 신축하였으며, 신축 이후 종로구에서 관리하여 왔으므로 '88년 시유 재산 조정지침에 의거 관리주체인 종로구 소유 주장

창신3동청사 신축계획

< 신축계획 >

- 위 치 : 창신동 23-837 외 2필지
- 대지면적 : 127평(재정경제부)
- 건 평 : 497.1평
 - ┌ 지하2층(89.6평) : 주차장, 기계실
 - ┌ 지하1층, 지상1층(31.2평) : 전용계단 및 엘리베이터 설치
 - ┌ 지상2층(186평) : 민원실, 사무실, 숙직실, 창고, 서고
 - └ 지상3층(190.3평) : 취미교실, 독서실, 인터넷, 공부방, 기타
- 공사기간 : 2001년 1월 ~ 2002년 12월 31일
- 공 사 비 : 13억 5,000만원
 - ┌ 공 사 비 : 4억원
 - └ 토지매입비 : 9억 5,000만원
- 개발방식 : 창립, 창신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연대개발방식으로 추진
 - 대지 소유는 구 소유로 두되 조합에 명의신탁하고 동 대지상 건축물 지분 배정시는 재건축조합 원에 대한 지분 배정비율보다 유리하게 배정받는 조건부 건립방식임
- 전체 건축물 건립계획
 - 지하2층, 지상19층 6,675평의 재건축조합에 의한 주상복합건물

< 창신3동 현청사 >

- 위 치 : 창신동 23-837
- 대지면적 : 127평(행정자치부)
- 건 평 : 149.5평(지하1층, 지상3층)
- 건축년도 : 1981년

청운경로당 매각

< 청운경로당 현황 >

- 위 치 : 청운동 4-20
- 토 지 : 223.5평(종로구)
- 건 물 : 81.7평
- 등록회원 : 30명

< 매각사유 >

- 청운아파트 인접 고지대에 위치하고 있음
- 청운아파트 철거 진행으로 이용대상 주민이 격감되고 있음
- 고지대에 있어 노인 접근이 곤란
- 대체 건물 확보(필운-신교 도로개설에 따른 확대보상시)

< 이전 예정건물 현황 >

- 위 치 : 신교동 6-27
- 대 지 : 42.9평
- 건 물 : 90.7평(지하1층 지상3층 다세대주택) 1991년 준공
- 개보수
 - ┌ 지하(22.6평) : 체력단련실, 샤워실, 화장실
 - ├ 지상1층(22.6평) : 할머니방
 - ├ 지상2층(22.6평) : 할아버지방
 - └ 지상3층(22.6평) : 다목적 취미교실
- 개보수 예산액(2001년 본예산) : 1억 1,800만원

라. 검토의견

- 창신3동청사 신축은 창림·창신아파트 재건축조합과 연대하여 신축하는 사안으로 '98년 11월 16일 제86회 임시회에서 기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았던 사안이나 시효(2년) 만료로 재승인을 구하는 사안이며
- 청운경로당 매각은 이용회원이 격감하여 '99년 12월 7일 용도폐지를 검토하였던 사안이나 대체시설 확보 후 처리하기로 하고 보류하였던 사안으로 대체시설이 확보되었으므로 매각계획은 타당하다고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이 형 술 위원, 이 현 구 위원, 정 병 환 위원, 오 금 남 위원, 홍 승 태 위원)

(답변자 : 재무국장 동 연 호)

문) 제1별관 옥상 증축의 평당 공사비는 얼마입니까?

답) 설계비와 구조안전진단비를 포함하여 평당 213만원 정도입니다.

문) 옥상에 증축시 건축법상 용적률에 위배되거나 안전에 하자가 있습니까?

답) 건축법상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리고 구청 담당직원들이 안전진단을 했는데 안전에 이상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으며 별도로 전문기관에 안전진단을 받기 위해 구조안전진단비 2,000만원을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

문) 옥상이 가건물인데 보온, 단열부분에 대한 검토는 있었습니까?

답) 보온문제를 충분히 고려하고, 옥상이라서 미관부분도 충분히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문) 제1별관은 현재 서울시와 건물 소유권 문제로 분쟁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론이 난 후 증축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답) 제1별관 3,4,5층이 서울시 소유라고 주장하여 분쟁의 소지는 있으나, 우리 구에서 현재 사용하고 있기에 앞으로 악화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문) 신축하는 창신3동청사 지하2층 주차장의 주차대수는 모두 몇 대입니까?

답) 주차대수는 모두 8대입니다

문) 청운경로당의 매각대상이 정해졌습니까?

답) 아직 매각대상은 정해져 있지 않으며, 공개입찰에 의해 매각할 것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 數 意 見 的 要 旨 : 없 음

8. 其 他 必 要 한 事 項 : 없 음

10. 2001년도 서울특별시종로구 세입·세출 예산(안)

審 査 報 告 書

2000. 12. 15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예산특별위원회

1. 審査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1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21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특별위원회(2000.12. 8)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제안이유

2001년도 예산은 건전·균형·재정운용 기조를 바탕으로 주민건의 숙원사업과 주민문화복지센터 건립, 지식·정보사회의 기반구축, 지역개발, 주민복지 향상 등에 최우선을 두어 예산을 편성·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골자

- 총예산 : 1,518억 8,369만 9,000원(전년 당초대비 4.2% 증액)
 - 일반회계 : 1,171억 6,711만 7,000원
 - 특별회계 : 347억 1,658만 2,000원
 - ┌ 의료보호 : 44억 9,916만 3,000원
 - └ 주 차 장 : 302억 1,741만 9,000원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예산현황

1) 총 예산규모

(단위:천원)

회계별	2001년도 예산(안)	2000년도 예산		증 감 률	
		당 초	최 종	당초대비	최종대비
합 계	151,883,699	145,796,190	171,179,024	4.2	-11.3
일반회계	117,167,117	111,421,101	133,460,715	5.2	-12.2
특별회계	34,716,582	34,375,089	37,718,309	1.0	-8.0

2) 회계별

가) 일반회계

(단위:백만원)

년도별	세 입			세 출			
	계	자체수입	의존수입	계	경상비	투자사업비	채무상환 예비비
2001년도 (구성비)	117,167 (100%)	84,665 (72.3%)	32,502 (27.7%)	117,167 (100%)	72,837 (62.1%)	39,763 (34.0%)	4,567 (3.9%)
2000년도 (구성비)	111,421 (100%)	73,894 (66.3%)	37,527 (33.7%)	111,421 (100%)	66,870 (60.0%)	40,139 (36.0%)	4,412 (4.0%)

나) 특별회계

(단위:백만원)

재원별	년도별	세 입			세 출			
		계	자체수입	의존수입	계	경상비	투자사업비	적립금 (예비비)
의 료 보 호	2001년도 (구성비)	4,499 (100%)	4 (0.1%)	4,495 (99.9%)	4,499 (100%)		4,497 (99.9%)	2 (0.1%)
	2000년도 (구성비)	3,314 (100%)	4 (0.1%)	3,310 (99.9%)	3,314 (100%)		3,313 (99.9%)	1 (0.1%)
주차장	2001년도 (구성비)	30,217 (100%)	29,968 (99.2%)	249 (0.8%)	30,217 (100%)	3,650 (12.1%)	9,524 (31.5%)	17,043 (56.4%)
	2000년도 (구성비)	31,060 (100%)	30,300 (97.5%)	760 (2.5%)	31,060 (100%)	3,730 (12.0%)	13,678 (44.0%)	13,652 (44.0%)

나. 검토의견

■ 일반회계

[세입]

○일반회계 세입은 전년대비 총 57억 4,6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세목별로는 자체재원은 지방세 수입 19억 6,400만원과 세외수입은 88억 600만원 등 107억 7,000만원이 증가된 반면, 의존재원은 조정교부금 12억 8,800만원과 국·시비보조금 37억 3,600만원 등 50억 2,400만원이 감소되었음

○주요증가요인

(단위:천원)

세입명	2000년	2001년	증가액	사유
사업소세	7,388,766	8,793,046	1,404,280	사업체, 임금인상6%, 경기회복
이자수입	434,300	956,600	522,300	2000년실적(약9억) 기준
사용료수입	8,193,726	8,628,103	434,377	접용료 귀속률 상향조정(30%→50%)
순세계잉여금	700,000	13,000,000	6,000,000	2000년 실적기준

○주요감소요인

(단위:천원)

세입명	2000년	2001년	감소액	사유
면허세	1,837,242	1,650,600	186,642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 무역업에 대한 면세 (2000. 7. 29 법개정)
하천사용료	379,080	254,880	124,200	주거용 요율 변경 0.015→0.005(하천법 개정)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169,389	1,842,586	326,803	7개동 대행업체 이관 (삼창 : 창신1,2,3, 명륜3, 대성 : 승인1,2, 혜화)
보건소진료수수료	420,984	231,423	189,561	공무원 신체검사 격년제시행 의약분업으로 약조제 금지
국유재산매각수입	305,000	210,000	95,000	국유재산법개정(2000.7.27)으로귀속률 변경 (매각 30→20%, 임대30→50%)
조정(보통)교부금	23,600,000	22,400,000	1,200,000	
보조금	8,300,000	4,900,000	3,400,000	필운-신교간 도로공사비 26억 공공근로사업 3억

[세출]

○186쪽 중간에 시설관리공단 위탁사업비로 50억 7,600만원이 편성되었으나, 187쪽 넷째줄에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으로 3억9,400만원이 별도로 책정되었는 바 자본전출금의 사용용도 등에 대한 검토

- 209쪽 아래서 둘째줄 관내 학교지원사업비로 신규 편성된 2억원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기 위한 예산인 바 지원사업내용, 지원금액의 적정성 등에 대한 검토
- 227쪽 하단 깨끗한 종로가꾸기 벽화제작비 2,000만원은 이대부속병원 옆 용벽에 벽화를 제작하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예산인 바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한 검토
- 281쪽 중간 시설비 중 민원실 개조 및 화장실 개보수공사비 6,385만원은 보건소 약국 폐쇄에 따른 민원실 개조공사 및 화장실 6개소를 보수하기 위한 예산인 바 '93년 건축된 건물임을 감안, 화장실 개보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 323쪽 사회복지 시책업무추진비 예산액 1억 2,700만 8천원은 계산 착오이므로 1억 819만 2,000원으로 정정되어야 함
- 357쪽 하단 어린이집 개보수비용으로 1억원이 편성되었는 바 시설별 개보수의 필요성 등에 대한 검토
- 400쪽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학술용역비로 7,000만원을 편성하였음. 관내 소하천은 구기천, 평창천 2개 하천으로 연장이 약 4km에 달하고 있음. 소하천의 현황에 비추어 용역의 필요성, 용역 결과 정책기여도 등에 대한 검토.
- 425쪽 종로구 공유토지 분할위원 수당은 3개월분만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01년 3월 31일자로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이 한시법으로 그 효력이 만료됨에 따른 사항임. 따라서 426쪽 각종 위원회 운영경비 산출기초에서 16명 10회는 10명 10회, 6명 3회로 수정이 요함

■ 의료보호특별회계

- 의료보호대상자에 대한 진료비 지원에 관한 특별회계로서 전액 시비 보조가 재원임
- 2001년 예산은 44억 9,900만원으로 전년대비 11억 8,400만원이 증가되었는 바 이는 의료보호 수가 인상으로 진료비가 증가된 데 따른 것임

■ 주차장특별회계

- 476쪽 노외주차장 설치용자금 5억원은 매년 계상하고 있는 바 현재 운용 상황이나 효과 등에 대한 심사 요망.
- 480쪽 주차장부지 매입 5건은 구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이 되지 않아 보완 조치가 이행되어야 할 사항임

다. 관련법규

<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제5항 >

시·군 및 자치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구역의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

제2조(보조사업의 범위) 시·군 및 자치구가 관할구역 안에 있는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의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할 수 있는 사업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학교의 급식시설·설비시설(학교급식법에 의거 학교의 설립경영자가 부담토록 되어 있어 자치구의 지원대상이 아님)

- 2. 지역사회와 관련한 교육과정의 자체개발사업
- 3. 지역주민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사업
- 4. 학교교육과 연계하여 학교에 설치되는 지역주민 및 청소년이 활용할 수 있는 체육·문화공간 설치사업
- 5. 기타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교 교육여건 개선사업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안재홍 위원장, 오필근 위원, 오금남 위원, 천상욱 위원, 현수한 위원, 박종식 위원, 홍기서 위원, 최강순 위원, 선상선 위원)

(답변자 : 행정관리국장 김현식, 재무국장 동연호, 생활복지국장 이병만, 도시관리국장 하철승, 건설교통국장 오종석, 보건소장 이성세, 감사담당관 김주희,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김성태)

문) 시설관리공단 자본전출금 1억 2,00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삭감된 내용은 무엇입니까?

답) 업무전산화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비가 전액 삭감된 사항입니다. 그 내역은 서버소프트웨어 구입비 600만원, 홈페이지 구축 1,500만원, 프로그램 개발비 7,900만원, 전자결재시스템 구축 2,000만원으로 시설관리공단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한 부분이니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 세운상가 데크보수공사비로 6억을 계상하였다가 1억이 삭감되어 본 위원회에 올라왔는데 이 공사는 언제 완료되는 사업입니까?

답) 세운상가 데크보수공사는 안전진단 결과에 의하여 시행하고 있는 보수공사로서 계속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6억이 계상되어야만 내년에 사업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

문) 이화·신영로터리 안전진단비로 5,00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너무 과다 편성한 것은 아닙니까?

답) 보도 육교를 안전진단 하는데 보통 1개소에 2,000만원이 넘게 듭니다. 그래서 2개소 안전진단 비용으로 5,00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 내년도 의회 10주년을 맞이하여 여론조사를 하여 발표할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 좋은 생각이라 사료됩니다. 여론조사를 실시할 경우 자체적으로 실시할 것인가 아니면 용역을 줄 것인가를 검토하여야 하며 그래야 예산 편성이 가능합니다.

문) 꽃묘 구입비로 1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다가 4,970만원이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편성내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답) 우리 구에서 꽃묘를 식재·관리하고 있는 곳이 9개소가 있는데, 1회 꽃묘량이 7,100~7,500본이며 개화기간은 보통 1개월 반정도 됩니다. 그래서 3월부터 12월까지 1개월 반마다 지속적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그대로 놔둘 경우 공적으로 있게 되어 미관상으로도 여러 가지 면에서 좋지 않습니다. 금년에도 1억 9,0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타구도 보통 2억~2억 5,000만원 정도 집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으로 7,0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답) 소하천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소하천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토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에는 흥제천, 평창천, 구기천이 있는데 흥제천은 분류하수관 시설 등 정비가 되어 있으나 평창천 및 구기천은 아직 자연 그대로여서 정비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해 나가야 합니다.

문) 꽃묘 구입으로 1억 4,91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전시행정은 아닙니까?

답) 꽃묘를 식재함으로써 도시가 화사해지고 외국인에게도 좋은 인상을 심어주는 등 그 효과가 매우 크다고 봅니다.

문) 재료비 중 일시사역인부임 2,029만 2,000원이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공원관리를 위하여 예산을 계상한 것으로 평일에는 공공근로를 사용하고 있으나, 토·일요일에는 청소인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시사역인부임을 쓰고자 한 사항인데 가능한 한 공공근로를 활용토록 하라는 뜻으로 전액 삭감된 내용입니다. 우리 구에는 사직공원, 삼청공원, 와룡공원 등 큰 공원이 있어 애로사항이 많으므로 원안대로 살려주셨으면 합니다.

문) 신발생 무허가건물 철거용역비로 2,724만 9,000원을 계상하였는데, 무허가건물을 철거하면 대집행비용은 건물주에게 청구해야 하는데 구비가 왜 필요한 것입니까?

답) 신발생 무허가건물이 생기면 먼저 철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용역을 주고자 신규사업으로 책정한 것입니다.

문) 명륜3가 1027~1035간 도로개설 공사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소도로까지 구 예산을 들여 공사를 해야 하는 것입니까?

답) 종로구는 다른 구보다 기반시설이 부족합니다. 또한, 기존 도시계획시설로 되어 있는 것은 이번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이 지역은 주민통행로 확보를 위해 다수 주민이 요구하고 있고, 기존 도시계획시설이고 해서 예산을 계상한 것입니다.

문) 종로구에 주말농장 계획안이 있다고 들었는데 이에 대하여 말씀해 주십시오.

답) 현재 종로구에 주말농장은 없습니다만, 독지가의 협조로 관리비만 들고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내부적으로 계획을 수립 중입니다. 몇몇 타구에서는 주말농장 운영으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문) 사회단체 정책보조비는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 등에 지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자유총연맹에도 정책보조비를 주는 근거는 무엇입니까? 그렇다면 자율방범대에도 지원이 가능합니까?

답) 금년도에 행정자치부에서 시달된 2001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에 자유총연맹에도 정책보조비를 편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자율방범대의 경우에는 임의단체 보조금으로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문) 관내학교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는 어떻게 사용하려는 것입니까?

답)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이 개정되어 지방자치단체장은 관내 대상학교에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 구 관내 고등학교 이하의 16개교에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16개교에서 중부교육청을 통해 18억 9,600만원을 요청해 왔으나, 구 형편상 2억원을 편성 요청한 사항입니다. 참고로 중부교육청에는 종로구, 중구, 용산구가 해당되는데 중구는 4억원을, 그리고 용산구는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 깨끗한 종로가꾸기 벽화제작비로 2,000만원을 계상하였으나 전액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사유재산에는 예산 지원이 불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반영된다면 이대병원 담벽에 벽화를 그릴 수가 있는 것입니까?

답) 이대병원 쪽 담벽은 병원과는 무관하며, 현재 계상된 예산은 재료비일 뿐이며 예산이 통과되면 학교나 협력업체를 선정하여 도움을 얻어 벽화를 그릴 예정입니다.

문) 보건소 민원실 개조 및 화장실 개보수 공사비로 6,385만 5,000원을 계상하였는데, 구체적인 내용을 말씀해 주십시오.

답) 없어진 약국과 민원실이 협소하고 내과가 좁아 민원실을 개조하려는 것이며 건물이 10여 년 되어 화장실을 보수하려는 것입니다.

문) 가로등 분전함 127개소 1,27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고장이 이렇게 많이 납니까?

답) 우기 때나 교통사고 등에 의한 파손이 많습니다.

문) 보안등 표찰 50% 정비로 5,050만원을 계상하였는데, 모두 파손된 것입니까?

답) 동 기능전환이 되면 보안등 관리가 구로 이관됩니다. 그런데 각 동에서 관리하는 보안등의 표찰이 많이 일치하지가 않습니다. 이를 정비하는 것으로 재료비 9,990원과 잡비를 포함해 개당 1만 996원으로 계산한 것입니다.

문) 제2건국과 관련한 예산으로 경상적 경비가 2/3 삭감되어 올라왔는데, 이것으로도 운영이 가능한 것입니까?

답) 행정자치부 지침으로 타 시·도와 동일하게 편성된 예산이니 만큼 원안대로 편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討 論 要 旨 :

○오필근 위원의 수정안 동의

- 일반회계 세입부문 : 원안 가결
- 일반회계 세출부문 : 수정 가결
- 특별회계 세입부문 : 원안 가결
- 특별회계 세출부문 : 원안 가결

6. 修 正 案 的 要 旨 : 별 첨

○ 예산과목별 축조 심사

○ 주요골자

【일반회계 세출】

- 감액 : 자유총연맹종로지부간담회 외 40건 10억 3,565만 3,000원
- 증액 : 직원휴양소(임차) 운영비 외 22건 10억 3,565만 3,000원

7. 審 査 結 果 :

- 일반회계 : 축조심사결과 수정(안)은 수정(안)대로, 기타(안)은 원안 가결
- 특별회계 : 원안가결

8.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9. 其他 必要한 事項 : 없 음

2001년 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내역

【예산특별위원회】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실경	감소예산액	수경산		수경예산의 증	비고
	세입	세출(세무)			간액	증액		
* 예산특별위원회 합계								
기획예산과	공보관리	업무추진비	자유총연맹종로지부간담회	3,537,811	1,035,653	1,035,653	3,537,811	
	법제경영	경상적경비	업무추진비	1,200	1,200	-	-	165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홍보원판제작	3,200	1,600	-	1,600
총무과	예비비등	공기업자본대출	시설관리공단자본대출금	393,676	60,000	-	333,676	187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2,000	1,000	-	1,000	201
	자재사업	시설비	프래카드(대)	2,200	200	-	2,000	201
		시설비	프래카드(중)	12,000	6,000	-	6,000	206
		시설비	관내학교지원사업비	200,000	100,000	-	100,000	209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여비	50,000	50,000	-	40,000	210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에어컨디셔너구매	24,000	12,000	-	12,000	210
민원봉사과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직원MT훈련(20%삭감)	70,038	23,362	-	46,676	216
	문화진흥	경상적경비	실무공무원해외연수(배낭여행)	50,000	25,000	-	25,000	217
문화진흥과	민원실운영	경상적경비	콘도회원권구입	250,000	250,000	-	-	219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154,106	7,706	-	146,400	241
	문화진흥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94,568	4,728	-	89,840	245
		일반보상금	종로여성합창단운영	25,900	2,590	-	23,310	250
		민간이전	제8회장애인편사대중회	6,000	3,000	-	3,000	252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당초예산액	수정액		수정예산액	잔 고
	세항	세목(세목)			감액	증액		
보건행정과	보건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5,421	2,271	-	43,150	269
			시설비	54,138	5,413	-	48,725	274
			자산취득비	16,086	3,217	-	12,869	281
청소행정과	청소행정	경상적경비	사무추진비	35,000	17,500	-	17,500	319
			사업추진비	127,008	18,816	-	108,192	323
			여성문화센터보수	10,000	5,000	-	5,000	344
사회복지과	부녀복지 유아복지	자재사업	어린이집개보수	100,000	30,000	-	70,000	357
			민간자본이전	54,700	10,940	-	43,760	358
			케이팝TV신청료	204	204	-	-	361
지역경제과	지역경제관리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	4,200	1,200	-	3,000	385
			일반운영비	6,000	3,000	-	3,000	394 (6,000-3,000)
			자산취득비	5,175	1,725	-	3,450	397 (3회 → 2회)
재무1과	재무1관리	자재사업	고지서송달통장담보비	3,200	840	-	2,360	426
			각종위원회운영경비	70,000	30,000	-	40,000	400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	20,292	10,292	-	10,000	404
세무2과	세무2관리	경상적경비	일시사업인부임	15,000	10,000	-	5,000	411
			유실수단지내수목이식사업	80,000	30,000	-	50,000	411
			가로수보식및생육환경개선사업	27,249	27,249	-	-	416
지적과	상하수관리	자재사업	신발생무허가건물철거용역비	50,000	10,000	-	40,000	445
			이화,신영로타라 안전진단	150,000	50,000	-	100,000	447
			평창4.5교 보수공사	200,000	200,000	-	-	446
토목과	주력기회 도로건설	자재사업	명륜3가 1027~1035간도로개설	5,600	5,600	-	-	434
			가로편배점이설비	2,000	2,000	-	-	434
			가로정비 초소(2개소)수리비	77,000	28,000	-	-	452 (11개 → 7개)
건설관리과	건설행정	경상적경비	도로안내표지판	48,000	24,000	-	24,000	453 (2회 → 1회)
			과속방지턱 보수					

[단위:천원]

부서	예산과목		사업명	당초예산액	수정예산액		종 비 고
	세항	세목(세부)			감액	증액	
총무과	인사관리	경상적경비	직원휴양소(임차)운영비 (75,000원*1.4034*30%)=9,450천원	9,450	-	22,118	31,568 216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경상적경비	주민문화복지위원실비지원 (600,000원*19동*12월)	-	-	136,800	136,800 222
기획예산과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자연보호요원 피복비	-	-	20,000	20,000 223
	공보관리	경상적경비	자유총연맹 정액보조금	-	-	12,000	12,000 165
구 의 회	예산운영	지방재정	정부채특자금 원금상환	-	-	300,000	300,000 182
	의사운영	경상적경비	의회개원10주년기념행사	51,000	-	19,000	70,000 149
			유관기관업무추진	10,000	-	5,000	15,000 149
			표창부상품구매	11,200	-	8,000	19,200
		자체사업	기념품제작 구매(중)	-	-	4,000	4,000 -
사회복지과	가정복지	자체사업	공기청정기 3개	-	-	3,000	3,000 -
			진공청소기	-	-	200	200 -
		경상적경비	경로어르신중식제공	-	-	20,000	20,000 0
문화진흥과	문화진흥	자체사업	사람의길장나무기	-	-	10,000	10,000 149
		자체사업	벼룩시장운영우수동시상	-	-	3,000	3,000 -
자치행정과	동행정운영	자체사업	인왕산해맞이동산체육시설조성	-	-	20,000	20,000 -
	자치행정	자체사업	창신2동청사증축비	-	-	30,000	30,000 -
자치행정	자치행정	경상적경비	사직동청사증축(가건물)	-	-	30,000	30,000 -
		자체사업	동문고운영비	11,000	-	11,000	22,000 224
		자체사업	주말농장 임차료	-	-	2,000	2,000 -
사회복지과	청소년복지	경상적경비	주말농장운영에 따른 물품구매	-	-	3,000	3,000 -
	도로건설	자체사업	주말농장운영에 따른 시설물설치	-	-	16,035	16,035 -
	상하수관리	자체사업	청소년지도육성비	-	-	10,500	10,500 -
토목과	도로건설	자체사업	도로유지보수비	600,000	-	200,000	800,000 447
		자체사업	평창무명교신설	-	-	50,000	50,000 -
	상하수관리	자체사업	관내하수시설보수공사	300,000	-	100,000	400,000 400

11. 200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審 查 報 告 書

2000. 12. 7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시 민 행 정 위 원 회

1. 審查經過

-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0년 11월 23일 · 종로구청장
- 나. 회부일자 : 2000년 11월 24일
- 다. 상정일자 : 제107회 서울특별시종로구의회 정례회
 제2차 ~ 제3차 시민행정위원회(2000.12. 5~12. 6) 상정 · 의결

2. 提案說明의 要旨

가. 제안이유

서울시 특별교부금으로 제12회 간주처리 예산편성한 「누하동 35~93간 도로확장공사」 사업이 연도 내 집행이 어려워 명시이월코자 함.

나. 주요골자

(단위 : 천원)

구 분 회 계 별	기 정 예 산 액			비 고
	계	제2회 추경예산	간주처리 (11회~14회)	
계	171,179,024	167,250,608	3,928,416	
일반 회 계	133,460,715	129,631,499	3,829,216	
특별 회 계	37,718,309	37,619,109	99,200	
의료 보호	3,315,246	3,315,246	0	
주 차 장	34,403,063	34,303,863	99,200	

3. 專門委員 檢討報告의 要旨

(보고자 : 전문위원 강 광 일)

가. 추경 이유

○성동구 등 6개 구와 공동으로 중랑하수처리장 내에 설치할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건설부담금 5억원을 년도내에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내년도로 명시이월하여 사용하고자 함

나. 추경 내용

- 예산총액의 변동 없이 예산총칙 제5조에 명시이월사업 명기
- 이월예산

(단위:천원)

항	세항	세세항	목	예산액	이월액
환경관리	청소관리	사업예산	자치단체 자본이전	500,000	500,000

○이월사유

- 시 주관으로 추진 중인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의 입찰방법 심의, 부지 확보에 따른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사업진척이 부진하여 소요공정을 감안할 때 년도 내에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내년도로 이월 사용코자 함

다. 음식물쓰레기 광역자원화시설 설치계획

- 설치위치 : 성동구 송정동 중랑하수처리장 내
- 규 모 : 200톤 / 1일
- 참여대상구 : 종로구,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중랑구, 동대문구
- 총사업비 : 132억 5,800만원
 - ┌ 국비 : 21억원
 - ├ 시비 : 51억 5,800만원
 - └ 구비 : 60억원 (구별 10억원×6개구)
- 완공예정 : 2001년 12월

라. 이월의 종류

- ┌ 명시이월 : 책정된 세출예산의 년도내 지출원인행위가 불가능할 때(의회 의결 필요)
- └ 사고이월 : 책정된 세출예산의 지출원인행위는 하였으나 년도내 지출하지 못한 경우(의회 의결 불필요)

마. 이월을 규정한 근거법규

- 지방재정법 제40조
 - ①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년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로써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세출예산 중 당해년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년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로서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바. 검토의견

- 본 추경은 기존 예산의 변동 없이 사업진척이 부진하여 부득이 집행시기를 내년도로 조정하는 내용으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4. 質疑 및 答辯 要旨

(질의자 : 선 상 선 위 원)

(답변자 : 생활복지국장 이 병 만)

문) 음식물쓰레기 자원화시설 건설부담금 예산으로 5억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집행하지 못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 성동구 소재에 건설예정인 중랑 광역자원화시설 건설에 있어 서울시에서 입찰방법 심의, 부지확보에 따른 시설변경, 타당성 조사,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실시 등이 부진하여 집행을 못한 것입니다. 이는 시에 납부해야 하는 돈으로 해당 구 모두 동일한 사항입니다.

5. 討 論 要 旨 : 없 음

6. 審 査 結 果 : 원안가결

7. 少數意見의 要旨 : 없 음

8. 其他 必要한 事項 :